

# 일 러 두 기

## ● 전체 일러두기

1. 본 통계는 2019년에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하여 작성 및 승인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관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소·고발된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기소·불기소 의견송치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므로 최종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 ①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수사기관에서 입건 후 작성하며,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한 형사사건 중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발생통계원표는 사건 단위로 작성한다.
  - ② 검거통계원표
    - 검거통계원표는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하며,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한명이라도 검거되면 작성하며, 이 후 다른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 검거통계원표는 사건 단위로 작성한다.
  - ③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법인 포함)로 작성되며, 기소중지를 포함한 모든 송치피의자에 대해서 작성한다.
    - 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로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사건과 각하사건, 즉결 심판사건(판사의 명령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제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검거·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3. 통계표 산출의 기본 단위는 건수와 인원이다. 단, <재산피해 및 회수 상황>에서는 금액(만원)이 단위로 사용되었다. 건수는 발생원표를 토대로 한 ‘발생건수’와 검거원표를 토대로 한 ‘검거건수’로 구분된다. 인원은 발생원표에 기초한 ‘피해자인원’과 피의자원표에 기초한 ‘피의자인원’으로 구분 된다. 이 중 피해자인원은 발생건수 기준 대표 피해자 1명의 정보를 기초로 집계되며, 피해자 인원 관련 통계 중 <신체피해 상황>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인원은 사건송치가 완료된 법인을 포함한 피의자의 수를 뜻하며, 범죄자특성 분석에서는 법인 피의자, 기소중지자 및 성별불상자가 제외되었다.
4.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므로, 범죄통계의 각 죄명분류는 “위반 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과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속성을 제1분류원칙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2010 범죄통계 이전에는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던 최종 대분류를 2011 범죄통계 부터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및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범죄 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이 순차적으로 추가로 되어 2012년 398개, 2013년 419개, 2014년 459개, 2015년 463개, 2016년 464개, 2017년 466개, 그리고 2018년에 467개의 최종 소분류가 확정되었다.
5. 특별법 위반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2011 범죄통계 부터 위반행위 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은 형법범에 통합하여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

- 우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여 통계수치를 표기하였다. 또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의 통계는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안보, 그리고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은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폭력행위 등’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폭처법 위반 사례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직무유기’로 분류하였다.
  7. 죄종분류에 있어, 2010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년 ‘강간 강제추행’ 범죄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3년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의 4가지 유형의 중분류로 세분화되었다. 이 중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은 현재의 통계시스템 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례들을 모아 별도 분류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중분류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학대 범죄 등이 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 위반행위와 2012년 12월에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풍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8. 살인범죄의 통계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기수와 미수 사이에 죄질 심각성 차이가 존재하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제시한 살인범죄(Homicide; Intentional 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9. 죄명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약칭하였다.
  10. 다양한 범죄행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2014년 제정)는 행위유형별로 분류되어 해당하는 각 범죄군에 추가되었다.
  11.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현 「2019 범죄통계」에서는 지난 5년간의 범죄추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통계 수치를 삭제 하지 않았다.
  12. 2017 범죄통계까지는 “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통계는 전체 범죄자수 대비 소속기관별 입건율(%)에 의한 단순 수치 였으나, 2018 범죄통계 부터는 기관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무원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을 추가 하였다.
  13. 최근 9년간(2011년~2019년) 최종(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변경사항은 부록의 「2011-2019」 죄명·죄종 변경 현황에 별첨하였다.

## ● 장별 일러두기

### I. 2019년 범죄개요 및 주요지표범죄 분석

#### 1. <전체범죄 발생 및 검거 추세>의 ‘발생비’

- 발생비는 절대적인 범죄발생 수준이 아니라 해당 인구를 고려한 상대적 범죄발생 수준을 의미한다.
- 2015 범죄통계까지는 발생비의 계산식에서 해당년도 인구수로 인구 추정에 기초한 추계인구를 사용하였으나, 2016 범죄통계부터는 범죄통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였다.

### II. 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

#### 1.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원표를 승인한 사건수를 의미한다.
-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이 집계된 것은 아니며, 원표승인 시점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동년도의 발생건수로 나눈 것이다.
- 2010 범죄통계까지는 ‘검거율’, 2011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 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 통계’는 지방경찰청별 통계이다.

#### 4.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검거인원’과 성별분류항목에서의 ‘불상’

-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 검거원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피의자 원표는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표에서 작성 가능한 항목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의 성별이 ‘불상’인 경우가 발생한다.

#### 5. <검거자>의 ‘미상’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원표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람 또는 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상’으로 명명하였다.

### III.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 1. <범죄 발생시간>의 ‘미상’

-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시간을 미상으로 표기한다.

#### 2. <범죄의 발생지>의 ‘항목분류방식’

- 범죄의 발생지 항목은 총 87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크게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이들 지역 외의 행정구역상 ‘시’로 구분된 도시(77개 지역), ‘기타도시’ 및 ‘도시이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모든 도시와 ‘기타도시’는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을 의미한다.
- ‘도시이외’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행정구역상 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 창원시와 마산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창원시’로 표기하였다.
- <범죄 발생지>의 지역별 나열순서에 있어, 먼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8개 권역(‘도’ 단위)을 구분한 다음, 같은 지역의 도시들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 IV. 범죄자 특성

1. 범죄자특성 분석 시 성별 불상자, 기소 중지자, 법인 피의자는 제외되었다. (2011년까지는 기소 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 비교 시 주의요망)
2. <범죄자 범행 시 연령>의 '14세미만'
  -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범죄자 통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2018 범죄통계」부터 이를 제외하고 집계하였다.
  - (2017년까지는 '14세 미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 비교 시 주의요망)
3. <범죄자 범행시 성별 연령>의 '미상'
  - 범죄자의 성별은 구분이 가능하나,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이다.
4.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의 '항목분류방식'
  - 범죄자의 혼인관계를 큰 틀에서 기혼자, 미혼자, 그리고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 기혼자는 다시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로 구분하였다.
  -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실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로 구분하였다.
5. <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의 '항목분류방식' 및 '미상'
  - 2011 범죄통계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미입력된 경우를 '정상'으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6. <범죄자 국적>의 '항목분류 방식'
  - 현행 통계 입력과정에서는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국적을 입력하지만, 한국인이거나 국적을 모르는 경우 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입력 항목을 '한국' 국적으로 집계하였다.
  - 2011 범죄통계까지는 전체범죄자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다.
7. <범죄자 전과 여부 및 횟수>의 '전과' 및 '미상'
  - 전과란 피의자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기록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을 받은 것은 전과에서 제외되었다.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범죄자의 전과를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 범죄통계 이후로는 이를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2011 범죄통계 이전에는 미입력된 부분이 '없음'에 포함되었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8.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의 '전회처분' 및 '미상'
  - 전회처분이란 본사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한다. 범죄자에게 진행 중인 직전 형사처분의 집행상황(수배중,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진행 중인 처분이 없을 경우, 과거에 받은 처분내용 중 가장 최근의 형사적 처분내용(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형집행정료, 감호소출소 등)이 입력된다. 전회처분은 전과뿐만 아니라 전과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범행시 전화처분은 송치의견이 기소인 경우에만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불기소시에는 미입력되기도 한다. 미입력 된 경우 2011 범죄통계 이전까지는 '없음'으로 집계되었으나, 2012 범죄통계 부터는 '미상'으로 분류되었다.

#### 9. <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의 '재범'

- 재범의 의미는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된 것이다.
- '전과'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 '재범'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 수와 재범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 10. <범죄자 공범관계>의 '미상'

- 2011 범죄통계 까지는 공범관계가 미입력된 경우 '단독범'에 포함시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 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 V. 피해자 특성

#### 1. <피해자 성별 연령>의 '미상'과 '불상'

- 피해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 '미상',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표기하였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주요 피해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 VI. 범죄자 유형

#### 1. 범죄자 정의와 유형 분류기준

- 범죄자 유형에서 사용된 '범죄자'는 형사 피의자를 뜻하며 수사 중인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미성년범죄자는 범행당시 연령이 19세 미만(만18세 이하)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 학생범죄자는 범행당시 직업이 학생(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 공무원범죄자는 범행당시 직업이 공무원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 전과범죄자는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의미한다.
- 정신장애범죄자는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신이상, 정신박약, 또는 기타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관에 의해 판단된 피의자를 의미한다.
- 외국인범죄자는 범행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피의자를 의미한다.
- 고령범죄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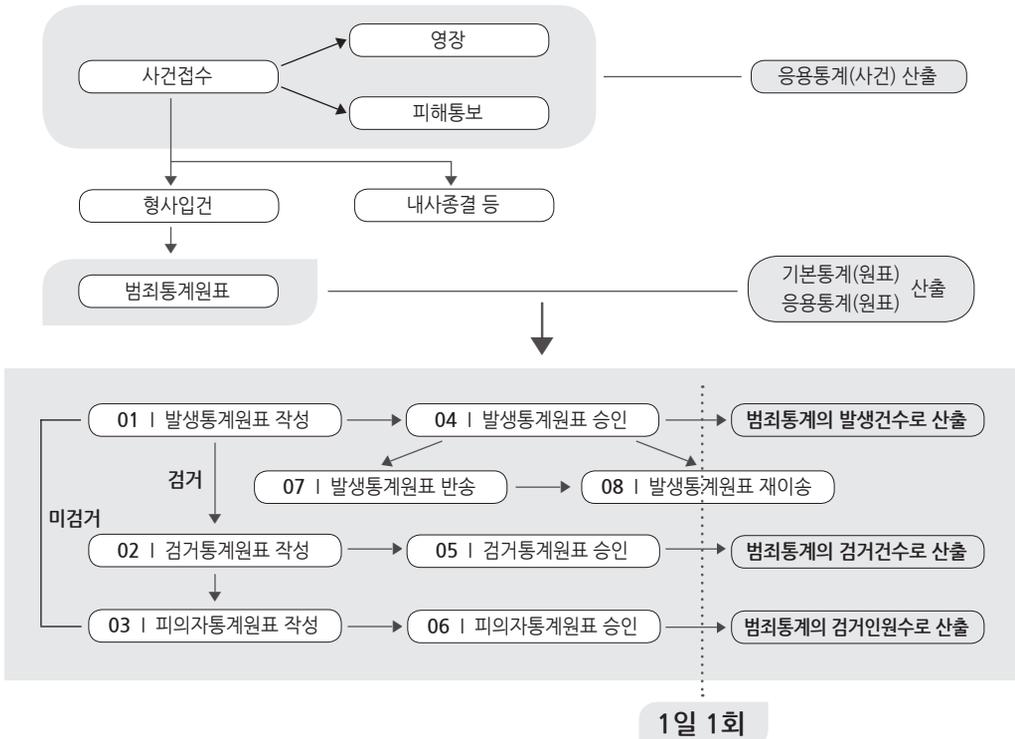
#### 2. 공무원 소속기관 분류의 변경

- 2019 범죄통계 에서는 2018. 7. 기준으로 개편된 국가기관 편제에 맞춰 소속기관을 분류하였다. 기존 부서의 업무가 분리되어 부처가 다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 ● 범죄통계 작성 방법론

1. 범죄통계는 입건 후 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를 ‘입력 → 승인 → 배치작업\*’의 단계를 거쳐 DB 및 범죄통계 시스템(CSS)에 집계된다.

※ 배치작업 : 승인된 범죄통계원표의 신규·삭제·수정 등 변동사항을 1일 1회 00시를 기준으로 범죄통계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



2. DB에 저장된 원표 원천데이터(RawData)\*를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및 산출 과정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검수 및 보정 작업 후 범죄통계책자를 발간한다.

※ 원천데이터 : 통계자료에서 최초 입력된 전산파일로, 숫자로 구성된 가공 이전 단계의 전체 데이터셋을 의미. 예를 들어 죄명 “절도”는 숫자 138010000으로 표기

## ● 범죄통계 작성 근거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5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예규 제772호, 2015.2.27.)

- I -1.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이하 "발생사건표"라 약칭한다), "검거통계원표"(이하 "검거사건표"라 약칭한다) 및 "피의자통계원표"(이하 "피의자표"라 약칭한다)의 3종으로 구분하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서에서 형사입건한 각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각 원표를 작성한다.
- III-1. (경찰의 전산입력 등) 경찰은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고, 경찰청장은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매일별로 입력 다음날까지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3. 경찰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69호, 2020.6.19.)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